

Sookmyung
* Women's *
University

유학생 가이드북

3. 사증 및 출입국 안내



숙명여자대학교 유학생서비스팀
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

1. 비자

- ★ 대한민국 법무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모든 외국 국적의 국제학생은 개강 전까지 유학(D-2) 비자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
- ★ 그 외의 비자를 이미 소지한 경우에는 현재 소지 중인 비자로 유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문의하여야 하며, 필요 시 비자변경 혹은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
- ★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비자: 외교(A-1) 내지 협정(A-3), 문화예술(D-1), 유학(D-2), 일반연수(D-4-2), 취재(D-5) 내지 무역경영(D-9), 교수(E-1) 내지 특정활동(E-7), 방문동거(F-1), 내지 결혼이민(F-6), 난민신청자(G-1-5), 인도적체류허가(G-1-6), 방문취업(H-2)자격소지자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(D-2)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
- ★ 비자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345)로 문의하기 바람. 일반전화, 휴대전화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45번을 눌러서 연결이 가능하며(해외에서 이용 시 +82-1345) 한국어, 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 등 20개의 언어로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(유료)

비자 종류

D-2 유학

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학사, 석사, 박사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

D-4 일반연수

유학(D-2)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 교육기관이나 기업체,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

일반연수(D-4)비자를 받아서 어학연수를 한 학생이 정규과정에 입학한 경우, 개강 전까지 유학(D-2)비자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.

2. 비자 발급, 변경

1 해외 체류중인 국제학생의 유학(D-2)비자 신청

국제학생은 유학생서비스팀(studyabroad@sookmyung.ac.kr)을 통해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학생 본인이 직접 자국 내 한국대사관(영사관)에 비자발급 신청하여 유학(D-2)비자를 취득하여야 함

★ 제출서류

- 신청서, 여권사본, 사진 1매(3.5cm x 4.5cm, 흰색 바탕배경, 6개월 이내 촬영본), 수수료
- 표준입학허가서
- 재정입증서류(\$20,000이상)-영문ver.
 - * 가족 명의의 재정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영문)를 함께 제출해야함
 - * 원본 또는 사본 모두 가능하나 각 지역 재외공간에서 원본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비자발급을 요청할 재외공간에 문의 후, 원본이 필요할 경우 유학생서비스팀에 신속히 원본 요청을 요망
- 한국대사관(영사관)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
 - * 아래 국적의 학생에 한함, 이외 국가 학생들은 불필요
 - **해당국가: 네팔, 동티모르, 라오스, 러시아, 말레이시아, 몽골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인도, 인도네시아, 중국, 캄보디아, 키르기스스탄, 태국, 파키스탄, 필리핀, 나이지리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벨라루스, 모잠비크, 몰도바공화국, 아제르바이잔, 앙골라, 에티오피아, 우크라이나, 짐바브웨, 카자흐스탄, 콩고민주공화국, 케냐, 파푸아뉴기니, 타지키스탄, 페루 (총 35개국)
- 이외 한국대사관(또는 영사관)에서 요청하는 서류
 - *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대사관(또는 영사관)에서 가족관계입증서류, 최종학력입증서류, 미화 2만 달러 이상의 재정능력입증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니 대사관(영사관) 방문 시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문의 후 방문 요망

2 일반연수(D-4) 등의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의 유학(D-2)비자 변경

일반연수(D-4) 비자 또는 동포방문(C-3-8) 비자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학생은 반드시 개강 전까지 유학(D-2)비자로 변경하여야 함

※재외동포(F-4)비자 등 유학비자 외 유학 활동이 가능한 비자 취득자는 해당사항 없음

★ 제출서류

- 신청서, 여권사본, 외국인등록증
- 사진 1매(3.5x 4.5, 흰색 바탕배경, 6개월 이내 촬영본)
- 수수료
- 표준입학허가서
- 등록금납입증명서
- 체류지 입증서류
(부동산 임대차계약서, 기숙사 거주확인서,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고시원확인증 등)
- 최종학력입증서류
- 재정입증서류: 등록금 + 체재비(월 85만원 * 체류허가월수)
- 동포방문(C-3-8)비자로 체류 중인 학생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1개월 이내 발급된 결핵진단서 준비 필수

3 기타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의 유학(D-2)비자 변경

Q 단체관광(C-3-2), 의료관광(C-3-3), 일반관광(C-3-9)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경우

A 해당 비자는 한국에서 유학(D-2)비자로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유학(D-2)비자를 발급받은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

Q 국내대학에서 편입하는 편입생 또는 국내대학을 다니다가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

A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학(D-2)비자의 체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국 내 한국대사관(또는 영사관)에서 숙명여자대학교 표준입학 허가서로 다시 유학(D-2)비자를 발급받은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

이외 사증면제(B-1), 관광통과(B-2), 단기일반(C-3-1), 일반상용(C-3-4) 등 특정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학생은 유학(D-2)비자로 변경 가능 여부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345)에 개별적으로 문의 바람
한국에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학생의 국적 및 세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3. 외국인등록·외국인등록증 재발급

1 신규등록

- 1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
- 2 비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숙명여자대학교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국제 학생은 대한민국 법무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★ 제출서류

- 신청서(출입국사무소에 비치)
- 여권
- 사진 2매(3.5cm x 4.5cm, 흰색 바탕배경, 6개월 이내 촬영본)
- 수수료
-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
- 체류지 입증서류
(부동산 임대차계약서, 기숙사 거주 확인서,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고시원확인증 등)
- ※ 출입국사무소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2 외국인등록증 재발급

- 1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,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다시 신청해야 함
- 2 분실을 대비해서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 등을 따로 기록해 두면 편리함

★ 제출서류

- 여권
- 사진 1매(3.5cm x 4.5cm, 흰색 바탕배경, 6개월 이내 촬영본)
- 신청서
- 수수료(3만원)

4. 체류지변경신고, 등록사항 변경신고

1 체류지 변경신고

- 1 외국인등록 후 이사를 하여 주소가 바뀌게 되면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나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. 또한, 하이코리아 홈페이지(<https://www.hikorea.go.kr>)를 통해서도 체류지변경 신고를 할 수 있음
- 2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함

★ 제출서류

- 여권
- 외국인등록증
- 신청서
- 체류지 입증서류
(부동산 임대차계약서, 기숙사 거주확인서, 거주주소제공확인서, 고시원확인증 등)

2 등록사항 변경신고

- 1 등록외국인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. 또한, 하이코리아 홈페이지(<https://www.hikorea.go.kr>)를 통해서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음
 -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
 - 여권번호,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
 - 학교 변경(명칭 변경 포함)
- 2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

★ 제출서류

- 여권
- 외국인등록증
- 신청서
-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(해당자)
-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
- 전(前)학교 제적증명서(해당자)
- 석·박사 동일과정 학교변경 필요 소명자료(해당자)

5. 체류기간 연장

1 재학생 체류기간 연장

- 1 재학생 중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학생들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비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
- 2 비자(체류기간)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체류기간 중 비자 체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비자 연장을 제한받을 수 있음

★ 제출서류

- 신청서,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
-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- 등록금납입증명서
- 재정입증서류(은행잔고증명서 등 최소잔액 미화 \$10,000 상당)
- 체류지 입증서류
(부동산 임대차계약서, 기숙사 거주확인서, 거주소득제공확인서, 고시원확인서 등)
- 결핵검진확인서(대상자만**)

2 추가학기 등록이 필요한 학부과정 재학생 체류기간 연장

학점미달, 졸업시험 또는 논문 미통과 등의 사유로 예정된 학사일정(4년, 8학기)을 초과하여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비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

★ 제출서류

- 신청서,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
-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- 등록금납입증명서
- 지도교수, 유학생담당자 확인서
- 사유서
- ※ 별도 양식이 없으며, 추가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학생이 직접 수기로 작성
- 재정입증서류
- ※ 은행잔고증명서 등 추가 연장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, 6개월 기준 최소 450만원 (75만원 x 6개월) 이상의 금액
- 체류지 입증서류
(부동산 임대차계약서, 기숙사 거주확인서, 거주소득제공확인서, 고시원확인증 등)

6. 졸업 후 체류 안내

유학비자 소지자

- 졸업 후 한국 체류 계획이 없는 경우,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함
- 대학원 진학, 구직, 취업, 결혼 등의 사유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, 각 사유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하여야 함
-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 기간 조정 신청
- 졸업을 앞두고 국외에 체류중인 경우 졸업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입국이 불가하며, 한국 입국 희망 시 새로 비자발급이 필요

구직(D-10)비자로 변경

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점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• 국내·외 학사 이상의 학위(학위수여예정자 포함)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
신청방법	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(연 1회 6개월 단위로 허가)
제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합신청서, 여권, 외국인등록증 • 사진 1매(3.5x 4.5, 흰색 바탕배경, 6개월 이내 촬영본) • 구직활동계획서 • 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, 학위증,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 제출) • 한국어능력 입증서류(TOPIK 또는 KIIP)
기타 안내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정능력인증서류, 체류지 입증서류 등 기타 심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• 졸업예정증명서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, 학위증(졸업증명서)이 발급된 직후 신청하여야 함 • 외국인유학생이 국내 유학 중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는 경우, 구직(D-10)체류자격 변경이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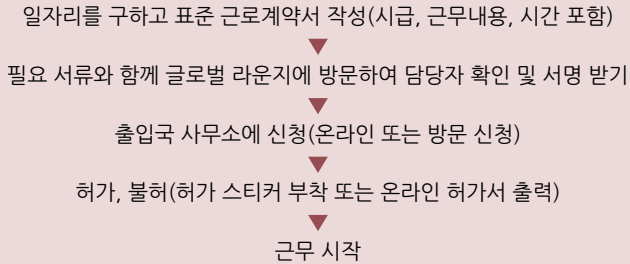
7. 시간제취업

유학(D-2)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시간제취업(아르바이트)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. 사전 허가를 위하여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유학생 서비스 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

1 대상

- 외국인 등록증 및 D2 비자 소지자(D2 Visa holder students)
- (성적)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(2.0)이상인 자
-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8학기 이내인 자

2 순서



3 필요 서류

1	여권
2	외국인 등록증
3	통합 신청서
4	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(유학생 담당자의 서명 필요)
5	근로 계약서
6	사업자 등록증 사본
7	성적표(또는 출석부)
8	TOPIK 자격증(3급 이상, 석박사 4급 이상)

※ 출입국사무소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필요로 할 수 있음

4

허용
시간

- 과정 별 허용 시간
 - 어학연수생: 주당 20시간 이내 허용
 - 학부과정: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대학은 25시간)
 - 석박사과정: 주당 30시간 이내
- 공휴일 및 방학 중 무제한
- 토픽이 없는 경우 주당 10시간 이내(공휴일 및 방학 포함)

5

허용
분야

-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
-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
 - 통역, 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 등
 -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, 식당점원, 행사보조
요원등 활동
 -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
 - 제조업에 대해서 시간제취업 제한

6

근무지
변경

- 아르바이트 장소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민원
(hikorea)를 통해 변경신고 필수
- 변경 범위
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, 장소는 2곳으로 한정

7

위반자
처리

-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시
 - 당사자 및 고용주를 출입국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
 - 1차 적발 시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
 - 2차 적발부터는 강제 퇴거
-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(근무시간, 근무장소 등)을 위반 시
 - 1차 적발 시: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
 - 2차 적발 시: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
 - 3차 적발 시: 유학자격(D-2) 취소

8. 출입국 관리사무소 안내

1 방문예약

방문예약이란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이며, 방문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예약시간에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

접수시간

연중무휴(등록외국인이 아닌 경우,
입국한 다음 날부터 방문예약이 가능)

방문예약 가능기간

예약신청일의 다음날부터 예약 가능
(당일 방문을 위한 예약은 불가)

온라인 예약절차

-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방문예약 신청하기 클릭
(<https://www.hikorea.go.kr/>)
- 2 방문예약신청 페이지 접속 > [방문예약신청(비회원)] 클릭
*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[방문예약신청(회원)]으로 진행 가능
- 3 외국인등록번호/여권번호/사증번호로 본인인증
- 4 방문예약 신청서 작성 후 하단의 [신청] 클릭
- 5 방문예약 일자, 시간 선택
- 6 완료, 방문예약 신청확인
신청내역 인쇄 및 민원신청서 작성 후 예약한 날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

2 체류기간 확인방법

-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체류만료일조회 클릭
(<https://www.hikorea.go.kr/>)
- 2 여권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하여 조회 가능

하이코리아 홈페이지



Guidebook for International Students



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

Cheongpa-ro 47-gil 100 (Cheongpa-dong 2(i)-ga), Yongsan-gu, Seoul, 04310, Korea
Tel. +82-2-710-9256 E-mail. studyaborad@sookmyung.ac.kr